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07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
【집행부발의】  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9.

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4. 9. 25.

기획재경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- 제 출 자: 달서구청장(디지털정보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9. 12.(목)
- 회부일자: 2024. 9. 12.(목)
- 검토기간: 2024. 9. 12.(목) ~ 9. 20.(금)

## 2. 제안이유

- 디지털체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급격한 미래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명칭, 기능, 운영 등(안 제3조~안 제5조)
- 사용허가, 사용자의 의무, 사용허가의 제한 등(안 제6조~안 제8조)
- 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, 반환, 입장 및 체험 제한(안 제9조~안 제11조)
-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, 보험가입, 편의시설 설치 등(안 제12조~안 제14조)

## 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
  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  -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
- 예산조치: 2025년도 본예산 반영 예정
-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입법예고(2024. 8. 12.~9. 2.) 결과: 의견 없음
-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초연결·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과학 기술,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자율주행, 로봇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체험·교육 시설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- 달서디지털체험센터, 달서디지털창작센터, 달서메타버스체험관 설치 및 위탁 운영,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역주민에 대한 디지털 기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또한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타시설 등과 비교한 결과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며,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별다른 이견이 없음.
-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 【비용추계서】

### 1. 사업개요

-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

### 2. 비용발생 요인

- 디지털체험교육시설(2개소)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 등

### 3. 관련조문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2025년부터 추진할 사업(5년)에 대한 비용 추계

- 시설 2개소(달서디지털체험센터, 달서디지털창작센터)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수익금(사용료, 수강료)은 시설의 세입예산으로 처리하여, 시설의 운영비 및 사업비로 사용

나. 추계의 결과: 1,717,6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: 구비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표: 붙임

### 6. 작성자: 기획경제국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

## <연도별 비용 추계표>

(단위: 천원)

구 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비 고
세 입	341,520	342,520	343,520	344,520	345,520	
사용료 및 수강료	11,520	12,520	13,520	14,520	15,520	
지방세	330,000	330,000	330,000	330,000	330,000	
세 출	341,520	342,520	343,520	344,520	345,520	
인건비·운영비 등	361,520	32,520	363,520	364,520	365,520	공공 운영비 (약2.2%) 물가 상승률 반영
재원 조달	341,520	342,520	343,520	344,520	345,520	
소계	341,520	342,520	343,520	344,520	345,520	
구비	330,000	330,000	330,000	330,000	330,000	
수익금 (사용료 등)	11,520	12,520	13,520	14,520	15,520	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조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,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조치를 마련하고,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 활성화, 시·도 및 초광역권의 경쟁력 향상, 지방과 수도권 간의 상생발전 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 산업 육성, 인재 양성, 과학기술 진흥, 교통·물류시설 확충, 문화·관광 육성, 환경 보전, 복지·보건·의료의 확충 등에 대해서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,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능정보화 기본법

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·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·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·이용할 때 안전성·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·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